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글로벌시증권자투자신탁UH(채권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7월 26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</u>

		- <문구 추가>	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--	--	-----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문구 추가	- <문구 추가>	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

		- <문구 추가>	<p>금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07.26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~ ⑦ (생략) ⑧ 증권의 대여 <주식 추가> ⑨ 증권의 차입 <주식 추가> ⑩ (생략) 나. 투자 제한 (생략)	가. 투자 대상 ① ~ ⑦ (현행과 동일) ⑧ 증권의 대여 주2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 ⑨ 증권의 차입 주3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⑩ (현행과 동일) 나. 투자 제한 (현행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

	<p>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p>	<p>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<위험 추가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7.8000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2022.07.02)</p>	<p>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7.2165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2023.07.02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</p>	<p>규약 문구 반영</p>	<p>가. 매입 (1) ~ (4) (생략) (5) <신설></p>	<p>가. 매입 (1) ~ (4) (현행과 동일) (5)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</p>

		<p>나. 환매 (1) ~ (4) (생략) (5) <신설></p> <p>(5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(생략)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(생략) (7)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(생략) (8)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	<p>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</p> <p>나. 환매 (1) ~ (4) (현행과 동일) (5)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6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(현행과 동일) (7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(현행과 동일) (8)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(현행과 동일) (9)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1) ~ 2) (생략) 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</p>	<p>1) ~ 2) (현행과 동일)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</p>	<p>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</p>

		<p>(1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</u>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</u> 이내 ③ (생략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u><신설></u></p>	<p>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 및 C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<삭제>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u> 이내. 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u>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</u></p>
--	--	--	---

		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	<p>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및 C-P2e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<삭제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--	--	---	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	가. 요약재무정보	가. 요약재무정보

	정사항 반영	- <항목 추가>	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7.11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(2023. 04. 03 실행)	<p>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주요업무</p> <p>1) (생략)</p> <p>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[의무]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p> <p>▸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</p> <p>(1) 회사의 개요</p> <p>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aitas.com</u></p> <p>(2) (생략)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	<p>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주요업무</p> <p>1) (현행과 동일)</p> <p>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p> <p>▸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</u>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</p> <p>(1) 회사의 개요</p> <p>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</p> <p>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<p>[의무해지]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합니다.</p> <p>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</p>	<p>[의무해지]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합니다.</p> <p>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</p>

		<p>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[임의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</u>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[임의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문구 조정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7. (현행과 동일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</p>

		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생략) (3) ~ (4) (생략)	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현행과 동일) (3) ~ (4) (현행과 동일)
--	--	---	--

<끝>.